

## 2030 태안군기본계획(안) 사전 검토

오 용 준 외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yjuno@cni.re.kr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법·지침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지역여건과 부합성, 지역발전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 01 계획의 기초
- 02 비전과 발전구상
- 03 부문별 계획
- 04 계획의 실행

### 요약

- 태안군은 국제해양관광지역으로써 다양한 개발수요와 보전의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임. 고령화율이 28.5%이지만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30~40대 주간활동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그러나, 인구저성장기조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2019년 현재 63,000명의 인구를 2035년 에 86,000명까지 전망한 과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특히, 본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지표(전화국, 우체국 등)는 산업화시대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인용하며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어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중심생활권의 목표년도 인구밀도를 342.6인/ha으로 고밀설정하고, 내부충진식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 용지를 산정함으로써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유도하는 등 산업화시대 성장형 계획을 지향하고 있어 적절한 보완이 요구됨
-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계획 인구, 공간구조 설정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간 환경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등 부문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문의 적절한 보완을 통해 「2035년 태안도시기본계획(안)」이 단기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20년 장기 계획으로서 정책 계획이자 지침계획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35 태안군도시기본계획(안) 부문별 검토 담당자

계획내용	검토 담당자
<b>제1장. 계획의 기초</b>	공간·환경연구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b>제2장 비전과 발전구상</b> 1. 계획의 기본구상 2. 계획의 주요지표 3. 도시공간구조 구상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공간·환경연구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b>제3장 부문별 계획</b>	
1. 경제·산업계획	경제·산업연구실 신동호 선임연구위원
2. 사회·문화계획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연구위원
3. 관광·레저계획	경제·산업연구실 김경태 연구위원
4. 토지이용계획	공간·환경연구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5. 기반시설계획	공간·환경연구실 김형철 책임연구원
6.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공간·환경연구실 한상욱 연구위원
7.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공간·환경연구실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8. 방재 및 안전계획	충남재난안전센터 조성 센터장
9. 경관 및 미관계획	공간·환경연구실 한상욱 연구위원
10. 공원·녹지계획	공간·환경연구실 사공정희 책임연구원
<b>제4장. 계획의 실행</b>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연구위원

# 01 계획의 기초

-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태안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변경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 만약, 현 시점에서 2040년 목표연도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상위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계획 지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계획체계 속에서 태안군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함
- 아울러 본 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료활용 기준년도(2015년)가 입안시점(2019년)과 크게 차이 나고 있음. 자료 분석시점과 계획단계 조정이 불가피함
- 본 계획(안)은 기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은 계획수립절차는 다른 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자문의견(주민참여계획, 빅데이터 활용, 국가최저기준 적용, 농어촌서비스기준 검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지역의 자산 평가 등) 대부분은 계획의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됨
  - 특히, 제1장 1-2. 사전조사는 계획서보다는 기초조사자료집에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설문 조사 역시 다른 연구에서 시행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주민참여수준 및 여건 분석이 부실한 상태임
- 일례로 태안군 고령화율은 25.8%에 달해 초고령화에 적응한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나 모바일 빅데이터의 디지털 발자국에 의하면 30~40대가 많은 향아리형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 적합한 주간활동인구 중심의 도시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함

## 02 비전과 발전구상

### 1. 계획의 주요지표

- 본 계획(안)에서 제시한 2035년 태안군 계획인구 86,000명은 2019년 태안군 현재인구가 63,000명 수준이고, 인구감소시대 통계청이 예측한 태안군 장래인구(2030년 70,000명)와 상위계획인 2016년 수립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태안군 계획인구(2030년 77,000명)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 특히, 계획인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통계청이 예측한 장래인구(2030년 70,000명)의 105%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하향조정해야 함
  - 아울러 사회적증가분에 대한 외부유입률(주민등록 전입비율, 산업단지 종사자 설문조사 등) 검증과 산업단지~주거단지~관광지 간 중복계상 제거를 통해 유입인구 과추정을 방지해야 함

### 2. 도시환경지표

- 본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지표(전화국, 우체국 등)는 산업화시대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인용하며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어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계획지표 대부분이 현황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획지표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는데 유용하지 못함
- 따라서,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가최저기준으로 투자하는 생활SOC 지표와 함께 질적지표 중심의 계획지표를 발굴해야 함
  - 특히, 근린공원 12개소와 같은 양적 지표 외에 태안군민이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시간 등과 같은 질적지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도시공간구조 구상

- 본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 공간구조 설정방식은 중심지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 중인지 등을 진단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도시관리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와 태안군 장래 개발축이 상충하는지 여부, 비오톱 1등급지가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축과 보전축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간구조 설정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태안군 도시공간구조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장래 공간구조 설정시 중심지 구조(단핵·다핵), 도시성장 형태(확산, 축소, 정체)를 실증분석하여 설정해야 함
- 본 계획(안)은 태안군의 무분별한 다핵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 도시기능이 설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개발 및 관리전략이 부재한 상태임
- 중심지체계는 도심(도시생활권), 지역중심(지역생활권)뿐 아니라 지구중심(기초생활권) 단위까지 설정하고, 중심지체계별 개발 및 관리전략을 제시해야 함

###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본 계획(안)에서는 중심지와 거리, 개발축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소생활권과 주변부 소생활권의 인구밀도를 달리하고 있지 않고, 시가화구역 및 비시가화구역에 대한 인구배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반드시 보완해야 함
- 특히, 중심생활권의 목표년도 인구밀도가 342.6인/ha에 육박하고 있어 태안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해야 함

# 03 부문별 계획

## 1. 경제 · 산업계획

### (1) 현황

#### 1.1 경제규모

- [표 3-I-1]에서 연평균 증가율 오류 수정 要
- 동 표에서 제시된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이 아닌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므로 2006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하여 수정해야함
  - 또한 동 기간 중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6.1%가 아닌 7.7%임
  - \* 연평균 증가율 =  $(2015년\ GRDP / 2006년\ GRDP)^{1/(2015-2006)} - 1$  엑셀상에서 구하는 공식 참조 要
  - 다만, 동 표에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전년대비 증가율로 수정해야함

#### 1.2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는 사업체 및 종사자수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산업별 생산액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태안군의 산업구조 파악 要
  - 또한 [표 3-I-2]에서 종사자수 단위는 '인'이 아닌 '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체와 종사자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 히스토그램이나 추세선 중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이 바람직함

### 1.3 산업별 특성화 분석

- 입지상 계수(LQ)분석 시 종사자 외 업체수 기준도 병행하여 비교분석 要
  - 또한 LQ = 1을 기준으로 전국 혹은 충남 대비 특화업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1.4 경제활동인구

- [표 3-I-4]에서 인구단위는‘인’이 아닌‘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제활동인구 관련지표 분석 시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고 바람직한 경제구조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정확한 해석은 바람직한 고용구조임

### 1.5 산업별 현황

- 모든 현황 분석 시 2016년 태안통계연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공인통계 활용 要
  - \* 예) 산업단지 현황에서 최근 데이터 활용 要
    - (참조 :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1155](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cd=CNNMENU01155))
  - [표 3-I-5]에서 농가 인구단위는‘인’이 아닌‘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I-7]에서 어가 인구단위는‘인’이 아닌‘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I-10]에서 종사자수 단위는‘인’이 아닌‘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I-11]에서 고용단위는‘인’이 아닌‘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통서비스업 현황을 전통시장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융 및 도소매 등 관련업종의 현황도 파악해야함
  -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연합회 및 상인 수, 공실률, 매출액 등 태안군 내부자료 및 시장경영 지원센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부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 문제점

- 산업별 문제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함
  - 특히, 브랜드화된 지역특산물의 부재, 어업의 저생산 및 저효율성에 대한 근거자료와 이에 기반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도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관련 상업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앞서 기술한 기본현황만으로는 태안군 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한 제시된 문제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관련한 현황 또는 실태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3) 기본방향

### 3.1 농어촌 자원의 융복합화

- 현 정부와 충남도의 주요 농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농정분야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food plan)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기반 구축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

### 3.2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방안

- 해양수산분야에서 태안군이 가진 해양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헬스케어 육성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시된 태안군의 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외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3 미래산업 부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 기업도시

- 3.2 성장동력확보와 신성장 동력발굴은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할 필요
  - 기업도시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외 안면도-원산도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위기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

## (4) 실천계획

- 전반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실천계획이라기 보다는 기본방향에 가까우므로 보완이 필요함

### 4.1 농어촌 자원의 융·복합화

-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기계 대여 및 수리,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은 농·어촌 자원의 융·복합 산업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전면 수정이 요구됨
  - 공동브랜드 개발의 경우, 기존 태안군 브랜드인 ‘꽃다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4.3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태안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예컨대, 농·어업분야에서 스마트 팜,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 등의 기술적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또한 해양헬스케어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해양헬스케어산업은 대도시 지향적 산업으로 태안군의 경우에는 지역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되, 관광과 연계된 헬스케어산업 기반육성 측면에 방점을 두어야함

### 4.4 미래산업 부흥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 4.3 성장동력확보와 유사한 내용으로 통합할 필요
  - 현 상황에서 기업도시 내에 생태산단(Eco Industrial Park, EIP)개념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환경 친화적 산단조성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업집적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4.5 생활권별 실천계획

- 제시된 실천계획 중 일부는 경제산업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한중해저터널, 안흥해양관문조성, 전원마을, 도로역 조성사업, 생활인프라, 군부대 이전, 우회도로 개설 등은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임

## 2. 사회·문화계획

### (1) 의료·보건 분야

- 현황 부분에 있어 의료시설과 인력현황의 두 현황만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는 바 현황과 문제가 연계된 보완이 필요시 됨
  - 문제점에는 서비스의 부재 및 접근성, 인력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바 현황에 있어서도 이를 뒷 받침 할 수 있는 내용들의 보완이 요구됨
- 생활수준에 비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 p286 섬지역의 경우 육지의 대형병원을 이용해야한 하는 실정이라 기술하고 있으나 태안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인 것인지 명확한 기술 필요함
- 의료·보건 분야의 기본방향에 있어 태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기술로 보완이 필요함
  - 태안에 적용하여도 무방한 내용들이나 모든 농어촌의 현실에 적용하여도 가능한 포괄적인 내용의 문제점인 만큼 태안군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오탈자 수정
  - p287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체계

### (2) 사회복지 분야

- 노인주거복지시설이 감소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입소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인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등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시 됨
  - 또한, 다른 연도와 2011년도의 차이가 약 10배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시 됨
  -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기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계

속에서의 설명도 필요시 됨

-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비교기준과 함께 설명이 필요함
  - 특히, 2009, 2010, 2011년도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문제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현황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현황과 문제점의 연계가 필요시 됨
  - 여성,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및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황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태안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기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현황과 문제가 연계되어진 기본방향이 요구되며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이 국가의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것인지, 태안군의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시 됨
  - 태안군의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것 이라면 제시되고 있는 국가의 기본방향과 표 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태안군의 특성이 반영된 기본방향의 제시가 필요함
  - 특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들과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친화도시의 과제 제시에 있어 태안군의 목표와 연계된 설명이 요구됨
  -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기본방향의 설정이 태안군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기본방향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태안의 모습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표3-2-1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여도 무방한 제도로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이 매우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으로 태안군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제시되고 있는 실천계획이 태안에 해당하는 사업들인지가 불분명함. 이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태안의 현실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함께 제시하여 태안군의 실천계획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3) 교육 분야

- 현황부분에 있어 높거나 낮은 수준 등의 평가시 국가의 평균이나 타 지역 평균 등 비교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인력부분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양적 부족을 나타내는 설명에 있어 질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 질적개선이 필요하다면 질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로서 태안군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리가 필요시 됨
  -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소 교육청의 문제로서 태안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와 관련된 현황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이질감이 있으므로 평생교육의 현황에 대한 내용의 보완도 필요시 됨
- 기본방향의 제시 또한 학교를 설치하고 교육과목을 만들며 교육과정의 운영과 신증축, 개보수 등은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태안군의 추진 가능성을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의 기본방향에 있어 내용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평생학습이 서열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시 되며 학교, 학급규모 및 교원, 학생 수의 적정화 등 이러한 내용들이 평생학습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실천계획에 있어서도 학교의 설치는 태안군의 소관이라 할 수 없는 등 태안군의 기능과 권한에 맞는 내용들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인 내용들을 교육청과 태안군의 권한에 따라 재구성하고 실천계획에 있어서도 태안군의 현실과 문제를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함

### (4) 문화·체육 분야

- 현황분석에 있어 문화시설 현황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및 지역축제 현황에 있어 문화시설을 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문화시설에 도서관을 포함한다면 이의 현황은 달라질 것이며 중복된 기술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논의된다면 교육부분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시설의 부족과 낙후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추측성 기술은 현황분석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임
  - 낙후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측성 내용을 현황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문제점의 제시에 있어 타 시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태안과 유사한 군과의 비교 등 비교 자료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부족, 홍보 부족, 주민참여도 저하 등 정책의 평가 시 평가 기준과 비교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에 있어서도 타 분야와 함께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방향과 시책도 중요하나 태안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3. 관광·레저계획

#### (1) 현황

- 320p에 제시되는 있는 태안 관광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변화하고 있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태안군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관광 공급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광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광상품의 개발 방안 제시 필요
  - 또한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의 반영을 위해 2018년, 2019년 관광트렌드를 적용하여 태안군 관광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2) 기본방향

-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에 대한 연결성이 필요함
  - 기본방향으로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천계획에서는 연계성이 없이 기존 태안군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제시되어 있음
  -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사업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계획으로 제시하거나 실천계획으로 제시한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3) 실천계획

- 지역축제 활용 방안은 문제점으로 제시된 태안군 축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축제의 제안이나 개발 방안을 제시
- 실천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서 활용 방안의 경우 태안이 보유한 도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 제시 필요
  - 유인도서 개발전략의 경우 개념적인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유인도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부합되고 관광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활용한 개발 방안 제시 필요

## 4. 토지이용계획

- 본 계획(안)은 개발가능지 분석의 개발불능지 기준에 비오톱(도시생태계등급) 1등급을 반영하고, 향후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도 비오톱을 반영하는 근거가 되는 상위계획이 되어야 함
- 본 계획(안)은 내부충진식 개발(infill development)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용지를 산정함으로써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 과다 추정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도시지역의 나지, 나대지 등 미개발지비율을 제시해야 함
  -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은 기성 시가지 또는 기존취락내 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비율을 최대한 고려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최소화하도록 함

- 공업용지 물량(3.363km<sup>2</sup>)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산업용지 물량 범위 내에서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본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 산정방식은 비도시지역의 과계획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통상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은 과거추이를 고려하여 신규로 필요한 용지의 면적을 산정하는데, 본 계획(안)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인구를 토대로 시가화예정용지와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계획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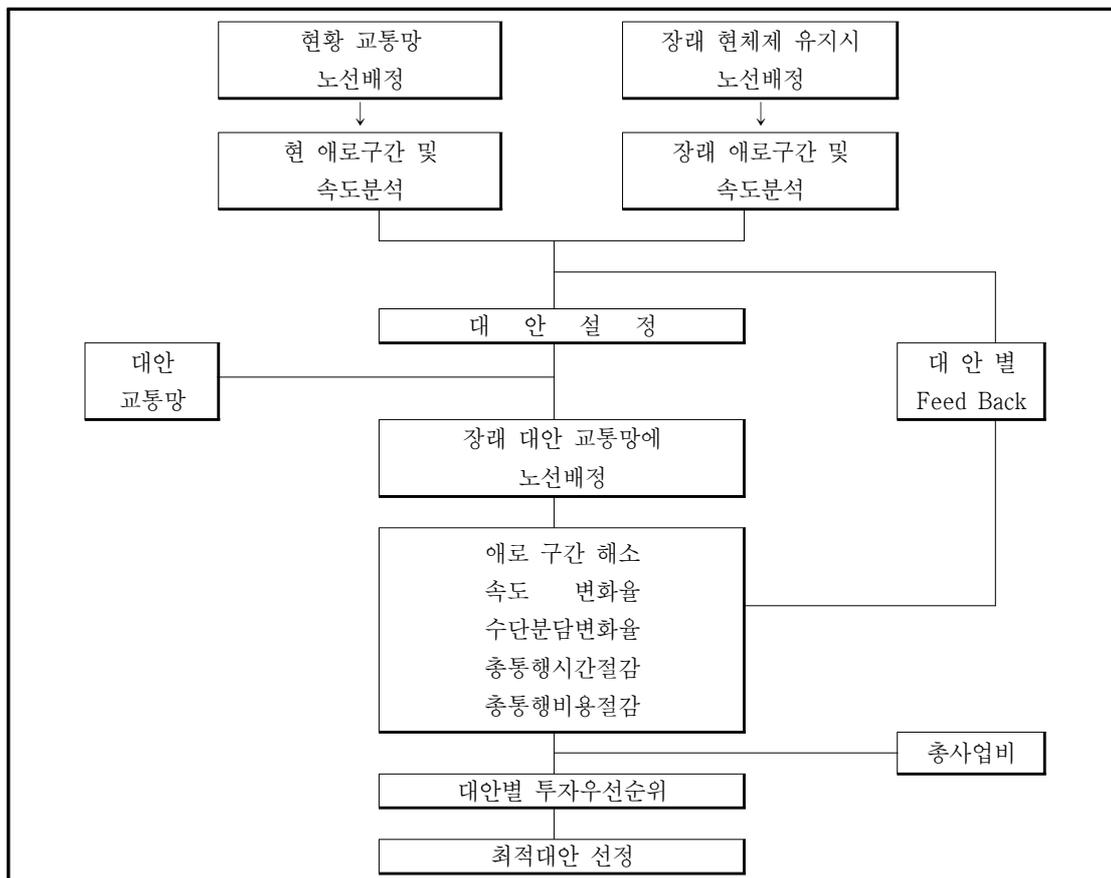
## 2. 기반시설계획

### (1) 교통계획

- (교통시설 현황분석 부문) 교통시설 현황분석 시 태안군의 여객과 화물 통행량을 분석하여 교통시설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기존 보고서 상의 교통시설 현황분석은 도로시설, 가로망체계,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교통처리 현황은 주요 가로망 교통량, 주요 교차로 서비스 수준, 다차로와 2차로, 신호교차로 등의 서비스 수준을 검토하였음
  - 기간교통망 시설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여객수단의 통행 목적과 수단 통행량, 화물수단의 통행량 등의 현황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자료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KTDB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음. 또한, 장래 2040년까지 예측된 여객, 화물 통행량 등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여 태안군의 장래 여건변화 검토가 필요함
- (항만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부문) 태안군에 소재한 항만 현황과 물동량 특성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항만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태안항의 물동량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유연탄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국가에서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태안항이 다기능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교통시설계획의 대안별 투자우선순위, 최적대안 선정 부문) 통행배정 결과와 대안별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장래 도로와 철도 교통망 계획 시 대안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교통수요예측 4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통행배정에서 추정된 총통행시간절감, 총통행비용절감에 대한 산출방법 제시가 필요함. 총통행비용절감의 의미는 차량운행비용 절감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지침(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거하여 교통사고감소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등 교통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회적 교통비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장래 도로, 철도 교통망 계획 시 대안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최적대안 선정에 대한 절차적인 흐름도는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철도망 등의 대안을 비교하고 최적대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 보고서 상의 통행배정 과정 흐름도



자료) 기반시설계획 보고서(p. 397), 교통계획보고서(p. 114)

● (태안군 최적가로망 계획 부문) 최근 태안군 광개토사업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 교통망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태안군과 내포신도시, 국가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연계하는 중부권 4-2축 고속도로(태안~세종), 보령과 상주를 연계하는 중부권 4-1축 고속도로(보령~상주) 등은 태안군의 지역간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중부권의 동서축 고속도로망을 연계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장래 도로망 계획 부문에 보완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래 철도망 계획에서 “안흥항~홍성역 국가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서해안 내포철도 등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시·종점에 대한 사항도 홍성역인지 삽교역인지 검토하여 도면표시도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태안군 광개토사업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추가반영 검토가 필요함

<표 3> 보고서 상의 태안군 철도시설계획



자료) 기반시설계획 보고서(p. 421), 제4장 교통시설계획(p. 154)

- (대중교통 부문)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버스 도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고서 상에서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사항을 제안하였으나, 현재 태안군은 경유버스가 운행중임. 지속적인 도입보다는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버스의 운행현황 등에 대한 현황검토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교통계획보고서, p. 176)
- (물류계획 부문)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부문에서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도입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야간에 화물차량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차량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교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기반시설계획 보고서, p. 397)

## 6.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 (1)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 계획과 관련 내용이 없음. 태안군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므로, 성숙안전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함이 타당

### (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 도심 및 시가지 정비 관련 내용이 없음.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

### (3) 주거환경계획

- 주거환경 계획의 기본 현황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및 가용토지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이를 고려한 최저기준 기술 내용 매우 빈약하므로 보완
  - 현황의 대부분의 내용이 인구 등 일반현황부터 주택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술함
  - 국토부의 최저주거기준, 충청남도의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였고, 태안군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사용방수를 제시하였으므로, 태안군의 최저기준 충족 현황 제시필요

- 주택공급계획은 원론적 수준에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인구배분밀도계획 및 개발가능지, 최저주거, 주거복지, 주택유형등을 고려하여 제시(지침, 4-6-3)
  - 주택수요는 태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별로 세분화되지 않음. 각 공간별 개발가능지, 최저주거, 주거복지, 주택유형을 제시 하지 않음
  - 태안군의 주택공급에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태안기업도시, 태안-보령간 연육교 개설에 대한 현황 및 영향에 대한 내용 전혀 없음
- \* 주택 및 주거와 관련성이 미흡한 농어촌개발, 항포구 개발 내용등은 삭제

## 7.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 제1장의 계획의 기초부분에 사전조사, 여건분석,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은 계획의 위계상 재배치가 필요함
- 통계는 환경부, 충남도, 태양군 등의 자료를 인용하되 최소한 2017년 말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함
- 각 장별 보고서체계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항목별 : 현황분석, 문제점 분석, 기본방향, 실천계획 등)
- p463 [표 3-VII-1] 온실가스 주요배출시설란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저유황유 공급 및 사용의무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환경부고시 2007-107호)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자연공원지정 등이 수록되어 있어 본문내용과 표제목 표내용 등이 불일치함
  - 오히려 부분별 환경기준, 환경부 목표, 충남도 목표, 태안군 목표 등을 제시함이 타당함
- p464 1.2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현황으로 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이 환경피해 유발시설이라 규정할 수 없고 단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함(또한 이러한 시설 외 환경피해 유발시설이 제시되어야 할 사항임)

- p465 환경관련 시설현황을 삭제하여 분야별 해당내용에 연계수록 하여야 함
- p468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함께 문제점 분석(문제점 분석 누락) 후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실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p478 대기환경자동차배출가스 감시강화 사진은 가급적 태안군 점검현황으로 대체(현: 마포구 사진)하되 초상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p479 하천법상 하천의 등급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나뉘고 그 외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함(법령개정에 따른 지방2급하천 이란 표현이 사라짐)
- p480 하천과 호소의 수질 및 생태계의 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기준으로 나뉘고 있음을 기록하고 현황에는 건강보호기준 초과지역 생활환경기준의 목표초과지역(하천과 호소)을 표기할 필요가 있음(또한, 제시된 글처럼 DO가 높다고 매우 좋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음)
- p481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초과지역에 대한 원인을 점오염원인으로 규정하였다면 이하 전개되는 기본방향은 점오염원의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정립하고 실천계획은 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귀결시켜 인과관계가 명료하도록 하여야 함
  - p484 군민과 함께하는 친수환경의 조성을 ‘군민과 함께하는 물환경개선’이 타당함
- p485 상수도 계획과 관련 p465 상수도 시설현황의 상수이용형태(광역, 지방, 자가 등)와 상수이용 계통에 따라 유무 및 관리상태 표기가 바람직함.
  - 상수시설현황과 연계하고 상수이용형태와 상수이용 계통에 따라 유무 및 관리상태 표기가 바람직함(2017년말 또는 2018년말 통계 인용).
- p486 태안군 내에는 보령담계통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음⇒태안군은 보령담광역 정수시설과 연결한 송수관로가 설치되어 생활용수 등을 사용함
- p487 기본방향 재검토(통합물관리, 수자원의 다변화, 근거리상수도망 구축 등)
- p488 2020년부터 인구를 적정규모 추계에 따라 상수도보급률, 급수량(최대), 일평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 재산정이 필요함

- p488 상수도의 실천계획은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인과관계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p490 하수도는 p465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현황의 내용을 삭제한후 재정리하여 하수처리형태(공공, 개인)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현황, 하수처리현황 등을 수록하여야 함
  - p465 하수도현황과 관련 최소 2017년 말 기준으로 하여야 함
- p492~494 하수도기본방향 및 실천계획은 하수도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도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p495 폐기물관리계획으로 바꾸고 기본적으로는 발생현황과 처리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야 함. 발생은 다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폐기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형태별 분류하고, p466 매립시설과 그 외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을 포함한 발생원별 처리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p495 표제목의 오타(생활폐기물)수정과 함께 본문내용 수정(처리방법은 소각처리가 50~60%로 가장 높음)
- p497~499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은 인과관계가 명료하도록 문제점으로 제시된 재활용비율 상향,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폐기물감량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P500 에너지 사용계획은 에너지관리 계획으로 전환하여 태안군 에너지 발생량(화석, 자연, 재생)대비 소비량으로 분석하여야 함
- p502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은 인과관계가 명료하도록 문제점으로 제시된 화석에너지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청정연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과 실천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8. 방재 및 안전계획

### (1) 일반사항

- 전체 목차상 위계가 맞지 않으며, 현재의 기술내용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목차 구성만으로 검토한다면, 1. 현황 1.1자연재난, 가. 일반현황 나. 유형별 피해현황 (1)풍수해, (2) 지진, ... 1-2. 사회재난 가. 일반현황 나. 유형별 피해현황 (1) 교통사고, (2) 화재, (3) 도시범죄, (4)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 형태로 작성되어야 함
  - 자연재난 유형으로 풍수해와 지진, 사회재난 유형으로 교통사고, 화재, 도시범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을 적시하였으나, 사회재난에서 논의하는 교통사고나 범죄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재난으로 다루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계획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범죄는 사회재난관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안전관리'로 별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시계획 상 유효한 자연 및 사회재난 유형으로 '설해', '붕괴' 또는 '폭발'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 재해, 재난, 재난상황, 예방, 대비, 대응 등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혼재되어 있음
  - 사회재난과 인적재난이 구분 없이 쓰이고 있어 통일이 필요함
  - 재난별·유형별 은 같은 의미 중복 표현으로 의미 없음

### (2) 세부 검토사항

- (507p) 자연재난 일반현황 및 풍수해 피해현황에서 태안군의 자연환경 등 기본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태안군은 강이 없는 구조로 하천의 홍수보다는 해안의 바람과 호우, 태풍으로 인한 어망어구 피해규모가 더 크며,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유형은 2010년 태풍 곤파스, 2012년 태풍 볼라벤, 태풍 덴빈, 2012년 호우, 2014년 대설, 강풍으로 나타났음
  - 피해규모는 인명, 재산 피해액과 복구액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피해가 상당했다'는 정도의 현황 제시는 문제점과 방재계획의 기본방향 제시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며 보완이 요구됨

-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비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하거나, 1960년~2015년까지의 자연재난 피해액을 기초로 시계열 분석 하여 2030년 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예상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 같은 자료 제시가 필요함
- (508p) 표 내용은 인명피해 현황과 피해액에 관한 사항으로 표 제목이 '풍수해 피해 현황'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풍수해에 포함된 재난 유형을 각주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508p) 현재의 표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피해액의 소계가 연도별로 추세를 나타내기 어려우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최근의 경향이 침수면적은 줄어드는데 반하여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재의 피해액 5년간 추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표가 제시되어 현황분석에 의한 문제점 및 방향제시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회재난 현황 기술은 사회재난과 안전관리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하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510p) '도시범죄'로 특정하여 관리할만한 사정이 태안군 도시계획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범죄'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함
  - (510p)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510p)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표에 따르면, 방조제와 소하천 시설의 침수위험 지정에 따른 사항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재해위험지구 사례는 금경사지 붕괴관련내용으로, 자료 제시의 일관성이 결여됨
- (511p)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관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적시한 대로, 도시 특성에 따른 재난유형 및 피해특성을 분석하고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재난위험을 분담하는 계획방식임
  -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폭우에 대한 취약성이 태안 읍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데, 작성중인 도시계획에 이같은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시설 증가가 예상되는 바, 취약지역 등급 제시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반영되어야 함
  - 2018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40년 국토미래상 에서는 안전한 국토, 균형된 국토, 깨끗한 국토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전문가, 청소년,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나타남. 2020년부터 적용되는 국토종합계획 기본 방향이 '안전한 국토'에 있는 만큼 상위계획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514p) 지역안전지수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매년 연말 공개되므로 지수값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함
  - (514p) 표 3-10, 표 3-11 “지역안전지표” 는 “지역안전지수”로 수정
  - 표 3-11에서 제시한 자료가 2017년 내용으로 최근 자료로 수정이 필요하며, 오탈자로 보이는 단위표기의 ha은 등급 표기로 변경이 요망됨
  - (514p) 지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여 ‘자연안전도’ 는 오탈자 수정 필요함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7대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가운데,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부여함. 따라서 현재 작성된 514페이지 1.4 의 두 번째 항목은 내용상 전면 수정되어야 함
  - 514페이지 1.4 의 세 번째 항목은 지역안전지수 지표 산출에 대한 의미와 함께, 등급은 책정의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기술된 문맥상으로는 의미 파악이 어려우므로 수정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네 개의 항목을 “1. 지역안전지수 설명, 2. 지표산출 방식 3. 현재 태안군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가지는 함의” 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 (515p) “태안군의 도시화에 따른 기후변화 증가에 따라~ ” 는 기후변화가 태안군의 도시화 때문은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혹시 다른 의미로 기술된 내용이라면 문맥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는 구분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본 계획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개념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의 증가” 로 표기 한 것은 용어의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됨
  - “인적 재난 증가에 따른 자율적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관련 수요증대” 는 문맥 수정이 필요함, 안전의식 부족이 인적 재난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으며, 재난 발생 증가의 원인을 인식의 문제에서 찾는 것은 시스템 구축과는 해결방안이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기어려움
- (516p)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방재시스템 구축과 이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표 3-12의 내용은 대비의 활동과 대응, 복구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대응체계는 대응 조직 구조와 법·제도적 시스템을 의미하므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대응체계인지 대비와 복구를 포함한 일반 활동 내용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9. 경관 및 미관계획

- 현황 분석 상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된 지역 구분 평가하고 종합하여 제시해야 함(지침 4-8-3 참조)
  - SWOT분석과 계획과제 도출을 제시하였는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에 대한 내용이 경관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요구되고, 경관관리의 잘된 지역과 잘못된 지역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경관관리 측면에서 종합분석을 시행하되, 잘된 지역과 잘못된 지역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관관련 법, 제도, 계획 등의 조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필요
- 경관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위계 재설정 및 보완이 요구됨
  - 비전(푸른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태안)의 내용이 자연경관에만 해당되고, 목표(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관광-레저경관, 주거경관)대비 시가화 지역(도시지역, 역사문화, 관광지역)에 대한 포괄성이 빈약하므로 비전을 보완
- 경관구조 설정에 있어서 권역, 경관축, 경관거점권역에서 제시한 예시사진을 태안군 경관에 부합토록 수정·보완해야 함
  - 경관거점의 내용이 경관권역의 내용으로 수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계획내용이 내용적 균등성을 고려한 보완 요구됨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계획내용이 과제, 사업, 제도적 내용이 위계가 없이 혼란스럽게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경관적 측면의 과제 중심의 내용으로 정리해야 함
- 누락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농촌, 해안 등)에 대한 경관 차별화 방안을 제시(누락 내용)해야 함
- 경관요소에 대하여 보전, 개선이 필요한 요소 선정, 경관관리 방향 및 전략 제시해야 함
  - 권역별 계획내용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침상 제시토록 되어 있는 경관요소에 대하여 보전-개선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고, 경관관리 방향 및 전략을 제시

## 10. 공원 · 녹지계획

### (1) 총론

- 기본방향에 대한 실천계획 미흡

- 태안군 전체의 Green & Blue Network 구축에 대한 실천계획이 미흡함
- 보전과 개발에 조화에 대한 실천계획이 미흡함
- 생활권별 공원 · 녹지의 균형적 배분 및 확충을 위한 실천계획도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공원의 법정 정의나 기능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임

### (2) 실천계획

- 유기적인 공원 · 녹지 연계방안 마련

- 충남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충남광역산림생태축이 설정되어 있으며(충청남도, 2009), 이는 국가가 주도한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의 연장선상이므로 지역의 중요 기맥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충남광역산림생태축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지역적으로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태안군 지역산림생태축(충남연구원, 2016)을 실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즉, 추가조성이 필요한 공원 · 녹지의 정확한 경계는 향후 수정 · 보완하더라도 우선조성이 필요한 공원의 위치설정을 위해서는 충남과 태안차원에서 연구된 바 있는 기존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음(필요시 shp. 파일 제공 가능)
- 그리고 태안에서 반드시 보전 · 관리해야할 산림면적(예시 : 20%)을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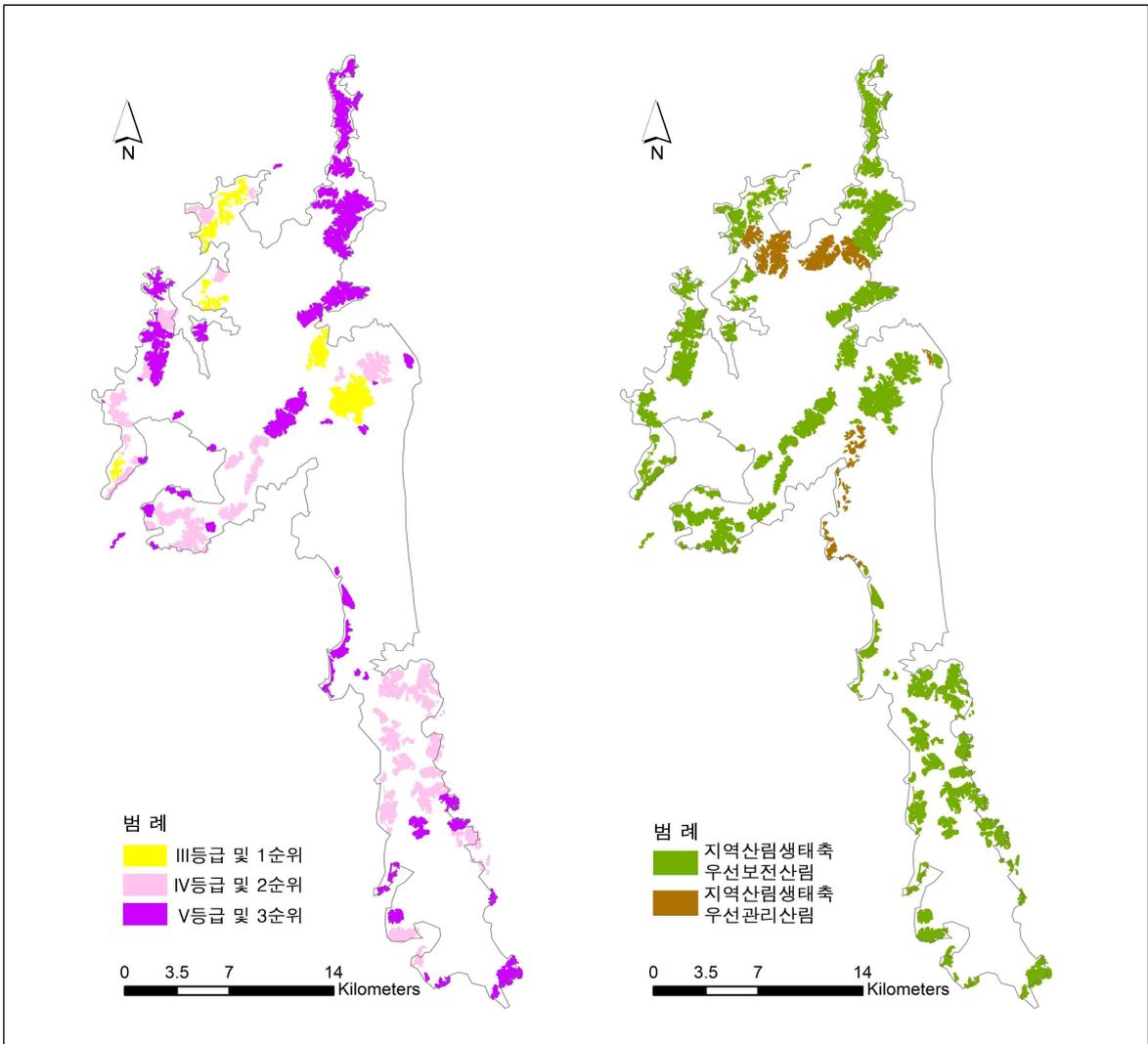
[표 3] 태안군 산림생태축 설정을 위한 우선보전·관리 산림 현황

시·군 지역구분	비오름 등급	광역차원 우선순위	지역차원 우선순위	산림축 면적(ha)	면적률(%)		
					산림축대비	산림전체대비	지역전체대비
태안 (50,391.7ha) (산림*: 23,623.7ha)	I 등급 (우선보전산림)	III	1순위	1,442.4	14.7	6.1	2.9
		IV	2순위	3,473.0	35.3	14.7	6.9
		V	3순위	3,799.8	38.7	16.1	7.5
	II 등급 (우선관리산림)	-	-	1,105.1	11.3	4.7	2.2
	합계				9,820.3**	100.0	41.6

\* : 태안군 통계연보(2016)의 임야면적 적용.

\*\* : 태안군의 '우선 보전·관리 산림' 면적 = 9,820.3ha ≒ 10,000ha(태안 전체면적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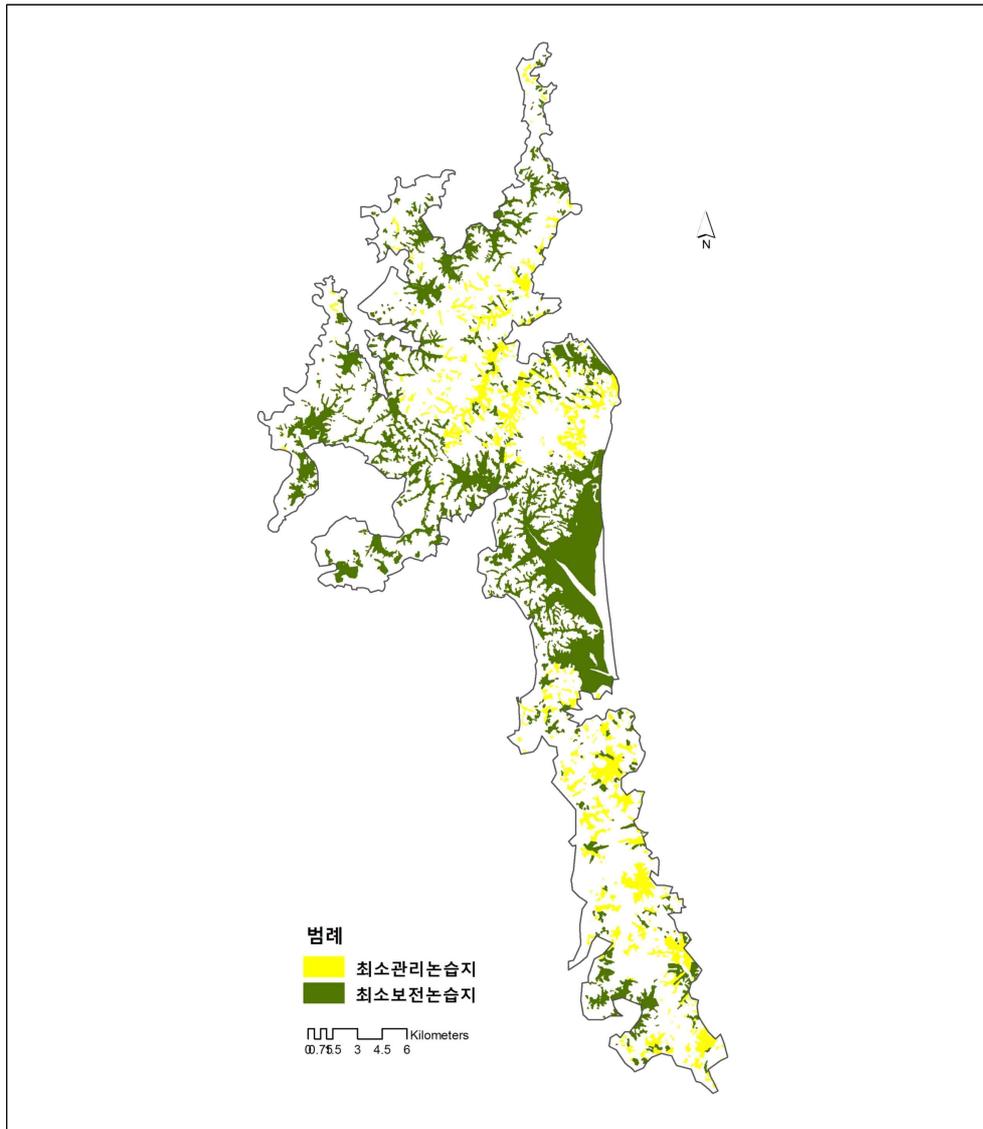
출처 : 충남연구원(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 전략.



출처 : 충남연구원(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 전략.

[그림 12] 광역 및 지역차원 산림보전 우선순위(좌) 및 태안지역산림생태축(우)

- **중요 산림축의 생태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의 논습지 보전·관리 필요**
  - 논습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주변의 중요 산림과 하천을 둘러싸고 있어 자연지역과 시가지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생태적 공간임
  - 따라서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해 해당지역의 생태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중요한 위치의 논습지가 농지전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원·녹지 및 도시 전반의 건강성을 고려하여 해당 논습지 전용방향을 제시하거나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음
  - 태안의 중요 논습지는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향후 보존·관리해야할 논습지의 최소면적 및 위치 등을 제시한 기존 연구(충남연구원, 2014)를 반영하거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방향성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필요시 shp. 파일 제공 가능)
  - 참고로, 태안의 중요 논습지(최소보전 및 최소관리가 필요한 논습지)는 태안 전체 면적의 22% 정도로 나타났고, 2014년 현재 기존 논습지의 70%는 반드시 보전해야할 논습지로 분석되었으므로 해당 논습지의 농지전용 시 논습지와 같은 반자연상태로 전용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입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충남연구원(2014) 충청남도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결과에서 추출작업 수행.

[그림 13] 태안 논습지의 최소보전 및 최소관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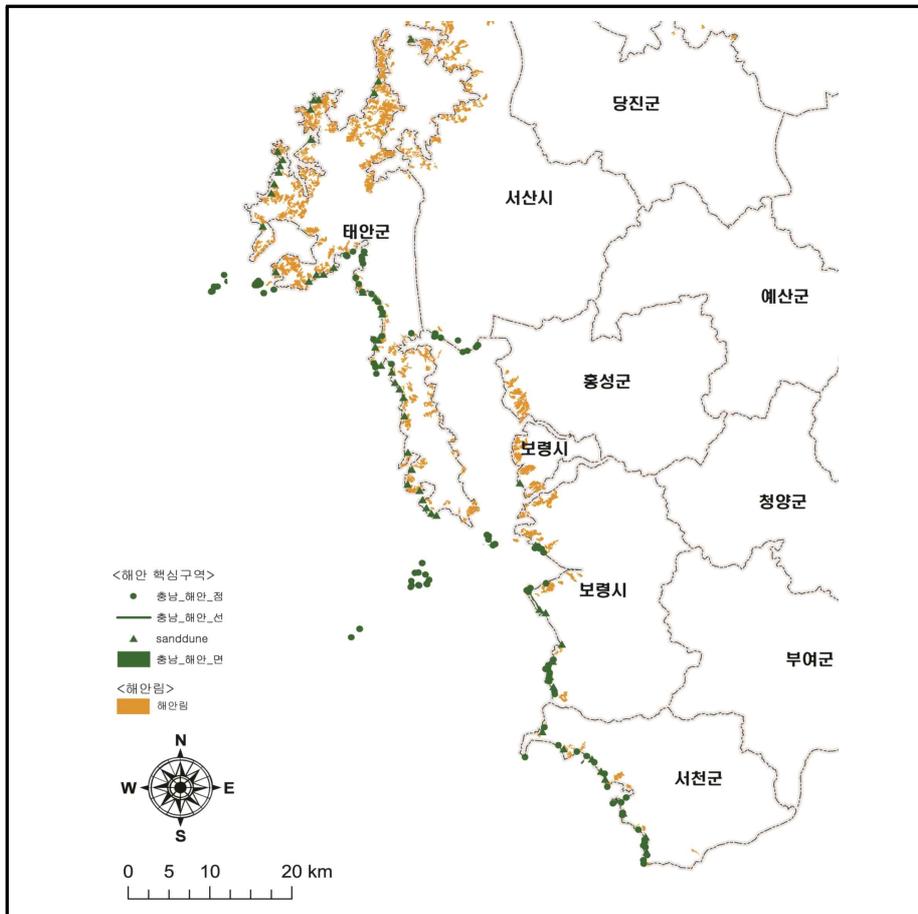
● 녹지계획에서 해안림에 대한 내용 미흡

- 해안림은 태안지역산림생태축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해안림이라는 독특한 특성(위치, 식생, 역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전·관리계획이 필요함
- 기존 연구를 통해 태안의 해안림은 완충림으로서의 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충청남도, 2012)

[표 5] 완충림으로서 해안림 선정결과

시군	시군별 개소수	면적(km <sup>2</sup> )	시군	시군별 개소수	면적(km <sup>2</sup> )
보령	162	25.4	태안	738	149.1
서산	235	32.0	홍성	37	6.9
서천	167	8.7	계	-	229.8
당진	135	7.7			

출처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3차).



출처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3차).

[그림 14] 연안생태네트워크 관리구역

●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한 대응방안 재검토 필요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보존녹지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민간공원조성’, ‘임차제’, ‘생태마당조성’, ‘마을숲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도시생태 측면에서 위험소지가 있음

- 또한, 상기의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듯한 표현의 세부전략 제시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 활성화' 부분은 '공원 조성 활성화'로 수정하고, 그 내용은 '보존녹지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공원 조성, 임차제, 생태마당 조성, 마을숲 조성 등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각 방법에 적합한 공원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 별로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함'으로 수정바람
- 참고로,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 활성화는 공원 일몰제 시기를 고려해볼 때,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는지 검토바람

## 04 계획의 실행

### 1. 재정계획

- 계획의 실행에 있어 재정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태안군의 현황분석에 포함 검토
  - 재정규모 전망도 자체적인 분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전망이 이루어지도록 함
- 수익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며 태안군의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 발행 또한 어려움이 동반되어지는 사항으로 가능 사업들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태안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법 또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내용들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 단계별 투자계획

-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시 고려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로 태안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태안군 및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방향설정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태안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